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9명(경정 1명, 경위 7명, 경사 8명, 연구사 3명)을, 경찰청 소속기관에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010명(경무관 1명, 경정 10명, 경감 123명, 경위 148명, 경사 381명, 경장 403명, 순경 883명, 6급 10명, 7급 10명, 8급 20명, 9급 14명, 전문경력관 나군 7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방경찰청에 사이버 범죄 수사 업무 등을 담당하는 7개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을 경찰청 소속기관 정원 7명(경정 7명)의 직급을 상향(총경 4명, 4급·연구관 또는 총경 3명)하여 배정하고, 민생치안과 수사역량 강화 등을 위해 정원 485명(경감 56명, 경위 424명, 경사 2명, 8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경정 56명, 경감 424명, 5급 5명) 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00. 00. 공포·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국관 및 소속기관별 증원되는 인력의 세부 직급을 반영하는 한편,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하부조직 간 업무소관을 명확하게 하고, 경찰청 보안국 내 하부조직의 명칭과 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0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이버안전 확보를 위한 기획 및 관련 법령 제정·개정

제9조의2제3항제2호(중전의 제1호) 중 “배포에 관한 사항”을 “배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국제경찰기구 등과의”를 “국제 공조수사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중전의 제1호) 중 “연구·기획·집행·지도·조정”을 “지도·조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이버범죄 수사에 관한 기획

6.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7. 사이버범죄 피해자 보호대책 수립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지원

제9조의2제5항제1호 중 “전자적 증거분석”을 “디지털포렌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중전의 제2호) 중 “전자적”을 “디지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제

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디지털포렌식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개선
4. 디지털 증거분석 기법연구 및 개발
5. 디지털증거분석관 양성·관리 및 지도
7. 디지털포렌식 유관기관 협력

제12조제1항 중 “보안1과·보안2과·보안3과 및 보안4과”를 “보안기획과·보안관리과·보안수사과 및 보안사이버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안1과장”을 “보안기획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안2과장”을 “보안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안3과장”을 “보안수사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좌익사범”을 “안보위해사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안4과장”을 “보안사이버과장”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보안1과·보안2”를 “보안관리과·보안수사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안1과장”을 “보안관리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보안2과장”을 “보안수사과장”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단서 중 “대구광역시 및 경기도북부”를 “대구광역시·경기도북부·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로, “대구광역시·경기도북부·충청남도”를 “대구광역시·경기도북부·충청남도·전라남도·경상북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5항 및 제7항부터 제11항까

지로 한다.

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제1부에 경무과 · 정보화장비과 · 경비과 및 교통과를, 제2부에 수사과 · 형사과 · 사이버안전과 및 과학수사과를, 제3부에 생활안전과 및 여성청소년과를, 제4부에 정보과 · 보안과 및 외사과를 둔다.

② 부산광역시 · 인천광역시의 지방경찰청 제1부에 경무과 · 정보화장비과 · 경비과 및 교통과를, 제2부에 생활안전과 · 여성청소년과 · 수사과 · 형사과 · 사이버안전과 및 과학수사과를, 제3부에 정보과 · 보안과 및 외사과를 둔다.

별표 3의2의 경상북도 지방경찰청의 경찰서명란 “안동 · 김천 · 영주 · 영천 · 상주 · 칠곡경찰서”를 “김천 · 영주 · 영천 · 상주 · 칠곡경찰서”로 한다.

별표 8 총계 “1,834”를 “1,853”으로 하고, 경찰공무원계 “1,134”를 “1,150”으로 하며, 경정 “149”를 “154”로 하고, 경감 “409”를 “405”로 하며, 경위 “320”을 “327”로 하고, 경사 “166”을 “174”로 하며, 일반직계 “700”을 “703”으로 하고, 공업연구사 “6”을 “8”로 하며, 기록연구사 1 다음에 “학예연구사 1”를 신설한다.

별표 8의2 총계 “1,914”를 “1,933”으로 하고, 경찰공무원계 “1,134”를 “1,150”으로 하며, 경정 “149”를 “154”로 하고, 경감 “409”를 “405”로 하며, 경위 “320”을 “327”로 하고, 경사 “166”을 “174”로 하며, 일반직계 “780”을 “783”으로 하고, 공업연구사 “8”을 “10”으로 하며, 학예연구사 “4”를

“5”로 한다.

별표 9 총계 “124,856”을 “126,866”으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24,815”를 “126,825”로 하며, 경찰공무원 계 “121,775”를 “123,719”로 하고, 경무관 “60”을 “61”로 하며, 총경 “498”을 “502”로 하고, 경정 “2,555”를 “2,615”로 하며, 경감 “8,631”을 “9,121”로 하고, 경위 “15,528”을 “15,252”로 하며, 경사 “25,104”를 “25,483”으로 하고, 경장 “31,519”를 “31,922”로 하며, 순경 “37,858”을 “38,741”로 하고, 일반직 계 “3,018”을 “3,084”로 한다.

별표 9 서기관·연구관 또는 총경 “7”을 “10”으로 하고,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1”을 “16”으로 하며, 행정주사·전산주사·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5”를 “21”로 하고,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2”를 “6”으로 하며, 행정주사보·전산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50”을 “60”으로 하고, 행정서기·전산서기·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48”을 “168”로 하며, 공업서기 “96”을 “95”로 하고,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24”를 “22”로 하며, 행정서기보·전산서기보·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62”를 “76”으로 하고, 전문경력관 가군(경찰인재개발원 교관) 1 다음에 “전문경력관 나군(경찰견 양성 담당) 3”를 신설하며, 전문경력관 나군(경호 담당) 3 다음에 “전문경력관 나군(지문감정 담당) 4”를 신설한다.

별표 9의2 총계 “125,685”를 “127,695”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25,644”를 “127,654”로 하며, 경찰공무원 계 “121,775”를 “123,719”로 하고, 경무관 “60”을 “61”로 하며, 총경 “498”을

“502”로 하고, 경정 “2,555”를 “2,615”로 하며, 경감 “8,631”을 “9,121”로 하고, 경위 “15,528”을 “15,252”로 하며, 경사 “25,104”를 “25,483”으로 하고, 경장 “31,519”를 “31,922”로 하며, 순경 “37,858”을 “38,741”로 하고, 일반직 계 “3,847”을 “3,913”으로 한다.

별표 9의2 서기관·연구관 또는 총경 “7”을 “10”으로 하고,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1”을 “16”으로 하며, 행정주사·전산주사·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5”를 “21”로 하고,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2”를 “6”으로 하며, 행정주사보·전산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50”을 “60”으로 하고, 행정서기·전산서기·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48”을 “168”로 하며,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24”를 “21”로 하고, 행정서기보·전산서기보·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62”를 “76”으로 하며, 전문경력관 가군(경찰인재개발원 교관) 1 다음에 “전문경력관 나군(경찰견양성 담당) 3”를 신설하고, 전문경력관 나군(경호 담당) 3 다음에 “전문경력관 나군(지문감정 담당) 4”를 신설한다.

별표 9의4 제2호에 14)부터 2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지능범죄수사 업무 (지방경찰청)	109명 (경위 25명, 경사 28명, 경장 28명, 순경 28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15) 여성청소년수사 업무 (지방경찰청)	329명 (경사 159명, 경장 145명, 순경 25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16) 사이버수사 업무 (지방경찰청)	242명 (경사 84명, 경장 97명, 순경 61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17) 수사지원 업무	144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경찰청)	(경감 109명, 경장 12명, 순경 19명, 6급 4명)	
18) 강력범죄수사 업무 (지방경찰청)	140명 (경위 7명, 경사 36명, 경장 32명, 순경 15명, 6급 6명, 7급 10명, 8급 20명, 9급 14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19) 과학수사 업무 (지방경찰청)	90명 (경위 12명, 경사 24명, 경장 39명, 순경 15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20) 디지털증거분석 업무 (지방경찰청)	43명 (경위 7명, 경사 14명, 경장 21명, 순경 1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사이버안전국에 두는 과)	제9조의2(사이버안전국에 두는 과)
① 사이버안전국에 사이버안전과 · 사이버수사과 및 디지털포렌식센터를 둔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② 각 과장 및 디지털포렌식센터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사이버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u><신 설></u>	<u>1. 사이버안전 확보를 위한 기획 및 관련 법령 제정 · 개정</u>
1.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이하 “사이버범죄”라 한다) 관련 정보 수집 · 분석 및 <u>배포에 관한 사항</u>	2. ----- ----- ----- <u>배포</u>
2. <u>사이버범죄 신고 · 상담</u>	<u><삭 제></u>
3.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한 연구 · 기획 · 집행 · 지도 및 조정	3. ~ 4. (현행과 같음)
4. 사이버범죄 통계 관리 및 분석	
5. 사이버범죄 관련 <u>국제경찰기구 등과의 협력</u>	5. ----- <u>국제 공조 수사 및</u> ----
6.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6. (현행과 같음)
④ 사이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	④ -----

을 분장한다.

<신 설>

1. 사이버범죄 수사에 관한 연구·기획·집행·지도·조정 및 통제

2. 사이버범죄 대응 수사전략 연구 및 계획 수립

3. 사이버범죄에 관한 수사

4. 사이버범죄 관련 국제공조수사

<신 설>

<신 설>

⑤ 디지털포렌식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적 증거분석에 관한 기획·지도·조정

<신 설>

2. 전자적 증거분석 및 지원

3. 전자적 증거분석 기법 연구 및 개발

<신 설>

4. 디지털증거분석실 운영

-----.

1. 사이버범죄 수사에 관한 기획

5. ----- 지도·조정 -----

2. ~ 4. (현행과 같음)

6.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7. 사이버범죄 피해자 보호대책 수립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지원

⑤ -----.

1. 디지털포렌식-----

2. 디지털포렌식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개선

3. 디지털 -----

<삭 제>

4. 디지털 증거분석 기법 연구 및 개발

6. (현행 제4호와 같음)

<신 설>

<신 설>

제12조(보안국에 두는 과) ①보안
국에 보안1과 · 보안2과 · 보안3
과 및 보안4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보안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
장한다.

1. 보안경찰업무에 관한 기획
및 교육
2. 북한의 실상에 대한 홍보
3. 보안관찰에 관한 업무지도
4. 북한이탈 주민관리 및 경호
안전대책 업무
5.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보안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
장한다.

1. 간첩 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
사의 지도 및 조정
2. 보안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3. 북한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4. 남북교류와 관련되는 보안경

5. 디지털증거분석관 양성 · 관
리 및 지도

7. 디지털포렌식 유관기관 협력

제12조(보안국에 두는 과) ① ---
--- 보안기획과 · 보안관리과 ·
보안수사과 및 보안사이버과---
-----.

② (현행과 같음)

③ 보안기획과장-----
-----.

1. ~ 5. (현행과 같음)

④ 보안관리과장-----
-----.

1. ~ 4. (현행과 같음)

촬영무

⑤ 보안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간첩 등 중요방첩수사
2. 중요 좌익사범의 수사

⑥ 보안4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이버공간에서 활동하는 보안사범 수사
2. 보안사범 수사 시 전자적 증거 분석 수행 및 지원
3. 사이버공간 내 보안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제32조(보안부에 두는 과) ① 보안부에 보안1과·보안2과 및 외사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보안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첩계몽 및 관련 단체와의 협조
2. 간첩 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의 지도 및 조정
3. 보안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4.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⑤ 보안수사과장-----
-----.

1. (현행과 같음)
2. --- 안보위해사범---

⑥ 보안사이버과장-----
-----.

1. ~ 3. (현행과 같음)

제32조(보안부에 두는 과) ① ---
--- 보안관리과·보안수사-----
-----.

② (현행과 같음)

③ 보안관리과장-----
-----.

1. ~ 4. (현행과 같음)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보안2과장은 간첩 등 보안사범의 수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 (생략)

제34조(지방경찰청에 두는 과·담당관 및 직할대 등) ① 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남부의 지방경찰청 제1부에 경무과·정보화장비과 및 경비교통과를, 제2부에 생활안전과·여성청소년과·수사과 및 형사과를, 제3부에 정보과·보안과 및 외사과를 둔다. 다만, 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남부의 지방경찰청에는 다른 지방경찰청의 수사과에 속하는 사무를 수사과와 사이버안전과로, 형사과에 속하는 사무를 형사과와 과학수사과로, 경비교통과에 속하는 사무를 교통과와 경비과로 각각 나누어 분장한다.

<신설>

④ 보안수사과장-----

---.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지방경찰청에 두는 과·담당관 및 직할대 등) 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제1부에 경무과·정보화장비과·경비과 및 교통과를, 제2부에 수사과·형사과·사이버안전과 및 과학수사과를, 제3부에 생활안전과 및 여성청소년과를, 제4부에 정보과·보안과 및 외사과를 둔다.

② 부산광역시의 지방경찰청 제1부에 경무과·정보화장비과·경비과 및 교통과를, 제2부에 생활안전과·여

지방경찰청의 경비교통과에 속하는 사무를 교통과와 경비과로 각각 나누어 분장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에 경무과·생활안전과·여성청소년과·수사과·형사과·경비교통과·정보과·보안과 및 외사과를 둔다.

⑥ 지방경찰청장 밑에 홍보담당관을, 지방경찰청 차장(차장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 밑에 청문감사담당관 및 정보화장비담당관을 둔다.

⑦ 지방경찰청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112종합상황실을 둔다.

⑧ 각 과장, 담당관 및 112종합상황실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다만, 과학수사과장은 서기관·연구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⑨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비단 또는 경비대·기동대·의무경찰대·경찰특공대 등 직할대를 둘 수 있다.

⑩ 제9항에 따라 두는 직할대

-----.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⑦ ~ ⑪ (현행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와 같음)

중 제주해안경비단장 · 정부과
천청사경비대장 · 정부대전청사
경비대장 및 경기남부기동대장
은 각각 총경으로 보한다.

신 · 구정원대비표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의2]

생활안전과 및 여성청소년과를 두는 경찰서표(제49조제1항 관련)

지방경찰청명	현 행	개정안
· 경상북도 지방경찰청 ·	· <u>안동 · 김천 · 영주 · 영천 · 상</u> <u>주 · 칠곡경찰서</u> ·	· <u>김천 · 영주 · 영천 ·</u> <u>상주 · 칠곡경찰서</u> ·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경찰청 공무원 정원표(제5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834</u>	<u>1,853</u>	+19
경찰공무원계	<u>1,134</u>	<u>1,150</u>	+16
·	·	·	
·	·	·	
경 정	<u>149</u>	<u>154</u>	+5
경 감	<u>409</u>	<u>405</u>	-4
경 위	<u>320</u>	<u>327</u>	+7
경 사	<u>166</u>	<u>174</u>	+8
·	·	·	
일 반 직 계	<u>700</u>	<u>703</u>	+3
·	·	·	
·	·	·	
공업연구사	<u>6</u>	<u>8</u>	+2
기록연구사	1		
<u>학예연구사</u>	<u><신 설></u>	<u>1</u>	+1
·	·	·	
·	·	·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의2]

경찰청 공무원 정원표(제5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914</u>	<u>1,933</u>	+19
경찰공무원계	<u>1,134</u>	<u>1,150</u>	+16
·	·	·	
·	·	·	
경 정	<u>149</u>	<u>154</u>	+5
경 감	<u>409</u>	<u>405</u>	-4
경 위	<u>320</u>	<u>327</u>	+7
경 사	<u>166</u>	<u>174</u>	+8
·	·	·	
일반직 계	<u>780</u>	<u>783</u>	+3
·	·	·	
·	·	·	
공업연구사	<u>8</u>	<u>10</u>	+2
·	·	·	
학예연구사	<u>4</u>	<u>5</u>	+1
·	·	·	
·	·	·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9]

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52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24,856</u>	<u>126,866</u>	+2,010
1. 공무원			
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124,815</u>	<u>126,825</u>	+2,010
경찰공무원 계	<u>121,775</u>	<u>123,719</u>	+1,944
·	·	·	
·	·	·	
경무관	<u>60</u>	<u>61</u>	+1
총경	<u>498</u>	<u>502</u>	+4
경정	<u>2,555</u>	<u>2,610</u>	+55
경감	<u>8,631</u>	<u>9,126</u>	+495
경위	<u>15,528</u>	<u>15,252</u>	-276
경사	<u>25,104</u>	<u>25,483</u>	+379
경장	<u>31,519</u>	<u>31,922</u>	+403
순경	<u>37,858</u>	<u>38,741</u>	+883
·	·	·	
·	·	·	
일반직 계	<u>3,018</u>	<u>3,084</u>	+66
·	·	·	

·	·	·	
서기관 · 연구관 또는 총경	<u>7</u>	<u>10</u>	+3
·	·	·	
·	·	·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u>11</u>	<u>16</u>	+5
·	·	·	
·	·	·	
행정주사 · 전산주사 ·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u>15</u>	<u>21</u>	+6
·	·	·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u>2</u>	<u>6</u>	+4
·	·	·	
·	·	·	
행정주사보 · 전산주사보 · 공업 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u>50</u>	<u>60</u>	+10
·	·	·	
·	·	·	
행정서기 · 전산서기 ·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u>148</u>	<u>168</u>	+20

·	·	·	
·	·	·	
공업서기	<u>96</u>	<u>95</u>	-1
·	·	·	
·	·	·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u>24</u>	<u>22</u>	-2
·	·	·	
·	·	·	
행정서기보 · 전산서기보 · 공업 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u>62</u>	<u>76</u>	+14
·	·	·	
·	·	·	
전 문 경 력 관 가군(경찰인재개발원 교관)	1		
<u>전문경력관 나군(경찰견 양성 담당)</u>	<u><신 설></u>	<u>3</u>	+3
·	·	·	
전문경력관 나군(경호 담당)	3		
<u>전 문 경 력 관 나군(지문감정 담당)</u>	<u><신 설></u>	<u>4</u>	+4

	.	.	.	
	.	.	.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9의2]

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52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25,685</u>	<u>127,695</u>	+2,010
1. 공무원			
계 (시 간 선 택 제 채 용 공 무 원 은 제외한다)	<u>125,644</u>	<u>127,654</u>	+2,010
경찰공무원 계	<u>121,775</u>	<u>123,719</u>	+1,944
·	·	·	
·	·	·	
경무관	<u>60</u>	<u>61</u>	+1
총경	<u>498</u>	<u>502</u>	+4
경정	<u>2,555</u>	<u>2,610</u>	+55
경감	<u>8,631</u>	<u>9,126</u>	+495
경위	<u>15,528</u>	<u>15,252</u>	-276
경사	<u>25,104</u>	<u>25,483</u>	+379
경장	<u>31,519</u>	<u>31,922</u>	+403
순경	<u>37,858</u>	<u>38,741</u>	+883
·	·	·	
·	·	·	
일반직 계	<u>3,847</u>	<u>3,913</u>	+66
·	·	·	

·	·	·	
서기관 · 연구관 또는 총경	<u>7</u>	<u>10</u>	+3
·	·	·	
·	·	·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u>11</u>	<u>16</u>	+5
·	·	·	
·	·	·	
행정주사 · 전산주사 ·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u>15</u>	<u>21</u>	+6
·	·	·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u>2</u>	<u>6</u>	+4
·	·	·	
·	·	·	
행정주사보 · 전산주사보 · 공업 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u>50</u>	<u>60</u>	+10
·	·	·	
·	·	·	
행정서기 · 전산서기 ·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u>148</u>	<u>168</u>	+20

•	•	•	
•	•	•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u>24</u>	<u>21</u>	-3
•	•	•	
•	•	•	
행정서기보 · 전산서기보 · 공업 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u>62</u>	<u>76</u>	+14
•	•	•	
•	•	•	
전문경력관 가군(경찰인재개발원 교관)	1		
<u>전문경력관 나군(경찰견 양성 담당)</u>	<u><신 설></u>	<u>3</u>	+3
•	•	•	
전문경력관 나군(경호 담당)	3		
<u>전문경력관 나군(지문감정 담당)</u>	<u><신 설></u>	<u>4</u>	+4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연 락 처	(02) 3150 - 1157